의안번호	제2802호
의 결 연 월 일	2024. 7. 25. (제295회)

의결사항	원안가결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4. 7. 1.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802호

제출연월일: 2024. 7. 1.
제 출 자: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고성군이 포괄적으로 규정·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 근거와 지원사업 대상을 구체화하여 보조금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절차 명시, 지원사업 대상 구체화(안 제4조)
- 제4조 제목 변경(경비의 지원 → 보조금 지원)
- 보조사업 대상 구체화(신설)

나. 포상 근거 규정 마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22209(2024. 6. 3.)호]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4-933호
가) 예고기간: 2024. 5. 22.(수) ~ 2024. 6. 11.(화)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경비의 지원)”을 “(보조금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협의회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평화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평화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등
7.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현저히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①----------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신 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신 설>	2.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
<신 설>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평화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신 설>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평화통일의식 고취 사업
<신 설>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신 설>	6.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등
<신 설>	7.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신 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현저히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행정과장 최 낙 창

참고 **관계법령(발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사무기구)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0. 5. 20.>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

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